

의안번호	제 272 호
의 결 연 월 일	2008년 월 일 (제 회)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제 출 자	충 청 북 도 지 사
제출연월일	2008년 10 월 6일

법무통계담당관 심사를 마침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72
----------	-----

제출연월일 : 2008년 10월 6일
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1. 제안사유

-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이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인가됨에 따라 관련 내용을 개정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충북과학대학 교명변경 : 충북과학대학 → 충북도립대학
 - 대학 설립주체를 명시하여 도립대학으로서의 신뢰성 및 인지도를 높이고 입학률 등을 제고하기 위하여 「충북과학대학」에서 「충북도립대학」으로 교명 변경
- 타조례 개정 : 「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 외 2건

3. 의안전문 : 붙임

4. 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
5. 관계법령 발췌 : 붙임

충청북도조례 제 호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장 제1절 제목 및 제15조제1항 중 “충북과학대학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”으로 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2008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다른 조례의 개정) ① 「충북과학대학 운영에 관한 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조례 제명, 제1조 및 제4조제3항 중 “충북과학대학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”으로 한다.

② 「충청북도 사무의 위임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, 제2조제4항, 제5조 및 별표4 위임대상기관란 중 “충북과학대학장”을 각각 “충북도립대학장”으로 한다.

③ 「충청북도의회 위원회조례」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2항제3호 나목 중 “충북과학대학”을 “충북도립대학”으로 한다.

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직속기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<u>충북과학대학</u></p> <p>제15조(설치)① 「지방자치법」(이하 “법”이라 한다) 제1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6조에 따라 지역사회발전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기 위하여 <u>충북과학대학</u>(이하 “대학”이라 한다)을 설치한다.</p> <p>②(생략)</p>	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3장 직속기관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제1절 <u>충북도립대학</u></p> <p>제15조(설치)①----- ----- ----- -----<u>충북도립대학</u>----- -----.</p> <p>②(현행과 같음)</p>

□ 충청북도 사무의 위임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지방자치법」 제 104조 규정에 의하여 충청북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시장, 군수, 충청북도 의회사무처장, 소방서장 및 <u>충북과학대 학장</u>, 자치연수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연구소장, 축산위생연구소장, 농 산사업소장,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할 사무를 정함으로써 그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키고 행정능률의 향상과 행정사무의 간소화를 도모함을 목적으 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 ----- ----- -----충북도립대 <u>학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2조(권한위임사항)①~③(생략) ④도지사가 관장하는 사무중 <u>충북과학 대학장</u>, 자치연수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연구소장, 축산위생연구소장, 농산사업소장, 청남대관리사업소장에게 위임하는 사무는 별표4와 같다.</p>	<p>제2조(권한위임사항) (현행과 같음) ④-----충북도립 <u>대학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위임처리 금지) 시장, 군수, 충청 북도의회사무처장, 소방서장 및 <u>충북과 학대학장</u>, 자치연수원장, 농업기술원장, 보건환경연구원장, 도로관리사업소장, 산림환경연구소장, 축산위생연구소장, 농산사업소장, 청남대관리사업소장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이 조례에 규정된 사무를 하부기관에 위임 처리할 수 없다.</p>	<p>제5조(위임처리 금지) ----- ----- -----<u>충북</u> <u>도립대학장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

□ 충청북도의회 위원회 조례

현 행	개 정 안
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(생략)</p> <p>②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.</p> <p>1. ~2(생략)</p> <p>3. 교육사회위원회</p> <p>가. (생략)</p> <p>나. <u>충북과학대학</u>, 자치연수원 보건환경연구원 운영에 관한 사항</p> <p>다. (생략)</p> <p>4~5.(생략)</p>	<p>제3조(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)</p> <p>①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.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3. -----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나. <u>충북도립대학</u>, -----</p> <p>-----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 <p>(현행과 같음)</p>

관계 법령 발췌

【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】

제17조 (지방공립대학 등) ① 시·도지사 소속으로 두는 대학과 전문대학 등(이하 "지방공립대학"이라 한다)의 조직과 분장사무는 시·도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·도 규칙으로 정한다.

② 지방공립대학의 하부조직으로 대학에 교무처·학생처·기획처 등과 사무처나 사무국을, 전문대학에 사무국(인천전문대학에 한한다)·교무과·학생과와 서무과 등을 둘 수 있다.

③ 대학의 사무처장이나 사무국장은 일반직 3급 지방공무원으로, 과장은 일반직 4급이나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, 사무처장 외의 처장 등은 교수나 부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.

④ 전문대학의 사무국장은 일반직 4급 지방공무원으로, 서무과장은 일반직 5급 지방공무원으로 임명하며, 서무과장 외의 과장은 교수·부교수나 조교수로 겸하여 임명한다.

⑤ 대학과 전문대학 외의 공립대학(「기능대학법」에 따른 기능대학 등을 포함한다)의 기구와 정원의 책정에 대하여는 해당 공립대학의 학과수·학생수·학력인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.

⑥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지방공립대학에 두는 다음 각 호의 교육공무원 정원을 책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「대학설립·운영 규정」 제6조제1항의 교원확보기준과 다른 국·공립대학의 정원확보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.

1. 총장·학장
2. 교수·부교수·조교수나 전임강사
3. 조교